

주민 참여 예산제도

1.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

○ 주민참여예산제도란?

-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,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,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.

○ 주민참여예산제도 유래

-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최초로 실시되었으며, 1996년 국제 연합에서 ‘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’로 선정되어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 되었음.
-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.

○ 법적 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)
-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
○ 참여방법

- 직접참여 :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
- 간접참여 : 참여예산 제안공모
 - 1) 일반제안형 : 구 홈페이지(주민e참여), 방문·우편 신청
 - 2) 자치계획형 : 동 지역회의를 통해 신청

2. 주민참여예산위원회

- 운영원칙
 -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
 -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
 -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
- 위원회 구성 및 임기
 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
 - 공개모집,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, 소관 국장 및 기획실장 등으로 구성
 - 2년, 1차례 연임 가능
- 위원회의 기능
 - 예산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
 -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
 -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

3. 사하구 주민참여예산 추진일정

주민제안접수	부서검토 (기획실,소관부서)	분과위원회,현장방문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	예산 편성	예산 확정
~ 6월30일	⇒ 7~8월	⇒ 9~10월	⇒ 10~11월	⇒ 12월
주민제안사업 접수	제안사업 취합, 검토 및 의견제출	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, 우선순위 선정 등	선정사업 예산편성	구 의회 예산 심의·의결